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868

발의연월일: 2021. 12. 13.

발 의 자: 송옥주·노웅래·박상혁

안규백 · 양향자 · 윤관석

이 광재・이수진(비)・임종성

장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연공원 내 무단 벌목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,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.

그러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복구 명령이 실제 철거와 복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.

이에 제31조에 따라 철거,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, 복구 명령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84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	
의 벌금에 처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의2.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
	거, 복구 명령 등 조치명령을
	<u>위반한 자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